

##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

|          |  |
|----------|--|
| 의안<br>번호 |  |
|----------|--|

2003. 11. 12

### 1. 제안사유

- 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의회의 자율적 민주적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의장과 부의장으로 출마하려는 의원은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제1항)
-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중요한 시정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5분 자유발언”이라 함)을 허가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하는 의원은 5분 자유발언 48시간 전까지 발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1조의2 제1항)
-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31조의2 제2항)
-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함(안 제31조의2 제3항)
-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 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안 제33조 제1항)
-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 함.(안 제 66조의2 제2항)

- 시정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 할 수 있고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은 10분을 연장 할 수 있음(안 제 66조의2 제3항)
-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집행부는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의회에 도달되도록 송부함(안제66조의2 제4항)
- 보충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질문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6조의2 제 5항)

### 3. 검토의견

- 의회의 내부의 회의진행과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규칙으로 사료되나,
- 첫번째, 제8조(의장. 부의장 선거)제1항 신설 조항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 선거시 일반 선거와 같이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있지만 의장.부의장 선거는 당선된 의원 전부가 의장. 부의장 선거의 피 선거권이 있는 동시에 선거권을 가지게 되므로 후보자 없이 선거를 실시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법 규정에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려는 제8조(의장. 부의장 선거)제1항 신설 조항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으로 출마하려는 의원은 10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를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으며,
- 본 조항이 신설될 경우 선거 관리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두번째 “3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자유발언 48시간 전까지 발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 본 제도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나 안전심사와 관련한 질의·토론 외에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자유발언”은 문자 그대로“발언”이지“질문”이 아니므로 의원의 각자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은 맞춤형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면 자유발언을 한 의원은 추후에 성남시의회의회의규칙 제67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에 의하여 서면질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성남시의회의회의규칙 제31조의2(3분 자유발언)은 “3분”을“5분”으로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번째, 제66조의2(집행부에 대한 질문) 제4항의 “집행부는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의회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는 신설 조항에 있어서는 「회의규칙」은 형식적인 효력의 면에서 법률이지만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 그러므로 만약 「회의규칙」이 지방자치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하겠습니까.
  - 이는 곳 「회의규칙」은 의회가 회의 진행과 그 운영 및 내부 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의회내부의 자주 법규이기 때문에 대외기관을 구속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